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3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누62575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8. 25. 선고 2015구합50795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1. 22.
판 결 선 고	2016. 1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 23,260,73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3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 다음에 "라. 원고는 [redacted]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7952호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70418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2016두50457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을 받았다."를 추가하고, 제5면 제7행 및 제11행의 각 "피고가"를 "[redacted]세무서장이"로 고치며,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는 [redacted]세무서장의 임의적 지체로 인하여 원고의 가산세 부담을 가중시킨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과세처분을 통한 납세의무의 확정 없이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3

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참조),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참조). 또한 과세관청은 양도소득확정신고기간 도과 후에는 과세권이 제척기간에 걸리지 아니하는 한 언제든지 양도소득세 부과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시에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그 정당한 세액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정당한 세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551 판결, 1997. 8. 29. 선고 96누1846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redacted]세무서장은 제척기간 내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redacted]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정당한 세액에 관한 소득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은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고(제1호), 그 가산세의 납부의무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제11호)'고 규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3

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은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는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에 관하여, 소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고(제1호),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하는 때에 확정된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소득세 및 그 가산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하는 때에 확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서대문세무서장이 2014. 2. 4.경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원고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납세의무의 확정 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상열

판사 정봉기

판사 조용래